

◆ 양주시 리·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◆

- 전문위원 이 재호 입니다.
- 「양주시 리·통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4월 25일 제출하여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.
-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

- 관내 공동주택 신축 및 지역주민의 리·통 분리요구에 대응하고, 행정리·통 분할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함

□ 주요골자

- 백석읍 가업2리를 가업2리와 가업5리(세림세미코빌아파트)로 조정함.

- 광적면 가납1리를
가납1리와 가납4리(성우헤스티아 아파트)로 조정함.
- 회천2동 덕계1통을 덕계1통과 덕계21통(빌라 밀집지역)으로,
덕계7통을 덕계7통과 덕계22통(양주푸르지오아파트)으로,
덕계13통을 덕계13통과 덕계23통
(범양 마더빌아파트)으로 분리 조정함.
- 현행 198개 리·통에서 5개 리·통을 신·증설하여
총 203리·통으로 조정함.

【 검토결과 】

- 본 개정 조례안은
지방자치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의
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리·통을
조정하는 사항으로
- 백석읍은 기존 가업2리 구역내의 세림세미코빌
아파트를 가업5리로 1개리를 신설하고

- 광적면은 기존 가납1리 구역내의 성우헤스티아 아파트를 가납4리로 1개리가 신설되고
- 회천2동은 기존 덕계1통을 분리하여 덕계21통으로 기존 덕계7통 구역내 양주 푸르지오 아파트를 덕계22통으로 기존 덕계13통 구역내의 범양마더빌 아파트를 덕계23통으로 하여 3개통이 신·증설되겠습니다.
- 리·통·신·증설에 따른 리·통장 수당 소요액은 년간 16,400 천원이 되겠습니다.
-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을 근거로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리·통을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흡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